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최병두** · 김영경***

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n Related Policies and Supporting Activities*

Choi, Byung-Doo** · Kim, Yeung-Keung***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핵심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책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주요어 : 외국인 이주자 정책, 지원 프로그램, 주변화 모형, 외국인 이주자의 정책 인식

Abstract :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explore what kinds of character are implied in Korean policies and support programme for foreign immigrants, secondly to analyze immigrants' recognition on them in terms of their types and dwelling places, and finally to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policies and support programme. Policies for foreign immigrants are often classified into three models of assimilation, of differential exclusion, and of multiculturalism, but the marginalization of foreign immigrants is suggested either as a new model or as implied in all of those models. As a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 it is found out that foreign immigrants, irrelevant to their type, recognize their policies as mixing those characters. Finally, multiculturalism with distributive equality and recognition justice to overcome marginalization, network governance for foreign immigrant policies to reflect their needs and participation, and sustainable and multicultural programmes for improving regional identity, ensuring civil rights, supporting comprehensive welfar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re suggested as measures to improve foreign immigrants' quality of life.

Key Words : policy for foreign immigrant, support programme, marginalization model, immigrants' recognition on policies

1. 서 론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증하고, 이들에 의한 사회공간적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들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을 조건지우는 법제도 및 관련 정책들과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내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일정

한 체류자격과 사회구성원의 지위를 부여 받게 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한 규제 및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과 지원 활동들은 이들의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을 적절히 통제하여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적, 지역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고숙희, 2009).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bdchoi@daegu.ac.kr).

*** 대구대학교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Daegu University)(036116lkj@hanmail.net)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 즉 정책의 기본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성향은 흔히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다문화주의 등으로 분류되며, 각 성향들은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물론 실제 한 국가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상이한 성향의 수단과 방법들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고, 또한 이주자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정책 성향들을 적용할 수 있다. 예로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동화주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배제주의가 적용되며, 또한 전문직 이주자에 대해서는 앞의 두 유형과는 달리 다문화주의가 적용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유사한 성향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책 성향은 지역적으로 어떤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는가에 따라 지자체별로 달리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성향은 다양하며 혼합적이다. 특히 이들에 관한 정책은 흔히 다문화(주의)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외형적일지라도 이들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사회문화적 권리보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구화 시대에 조응하는 다문화사회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경제와 근대 국민국가에 근거를 둔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반면, 이들에게 기존 국민들과 대등한 자격이나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사회공간적으로 주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선진국들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이들의 정책은 상당히 동화주의적 또는 차별-배제주의적 성향을 내재하면서 또한 이들을 주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고 있

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성향과 각 유형별 정책의 전개과정,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시민단체들의 지원 활동을 살펴 본 다음, 총 1,353명의 외국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유형별·지역별로 2008년 10월에서 2009년 2월 사이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들이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끝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의 개선 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2.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배경과 동향

1)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의 성향과 특성 변화

최근 국민국가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지구화과정과 더불어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촉진된 초공간적 이동성의 증대에 따라, 국경을 가로 질러 이동하는 초국적 이주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일민족·단일문화를 전제로 이루어졌던 근대 국가는 인종적 혼종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물론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동반되는 인종의 혼재와 문화의 혼합은 기존 국민국가의 사회적 질서와 구성원들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을 적절히 통제·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에 관한 정책과 지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은 1990년대 이후 증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 관한 법제도들이 발달해 왔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흔히 다문화(주의)정책으로 불리면서,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차별 받는 것을 막고, 인종적, 문화적 차이의 인정에 근거하여 이들의 유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Kymlicka, 2005). 그러나 실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은 이러한 다문화주의적 성향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은 새롭게 이주하여 생활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역의 기준 질서에 무조건 적응하도록 요구되거나 또는 유입·정착하고자 하는 국가에 의해 일정한 조건들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 배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는가는 해당 국가가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에 관한 정책 성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를 경험했던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통해 유형화되고 있다. 즉 Castles and Miller(1998; 2003), Martiniello(윤진 역, 2002) 등은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민자 정책의 유형을 차별적 포섭/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표 1), 이러한 유형 구분은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설동훈 등, 2008; 고숙희, 2009; 최무현, 2008; 박진경, 2010 등).¹⁾

차별적 배제 모형은 외국인 이주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분야들, 예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전문직 이주자나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시장과 같은 사회영역에서는 허용되지만, 복지サービ-

스나 시민권 등에 대한 접근은 거부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성향의 정책은 이주자들의 자격이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도구적 효용성과 사회적 갈등 및 위협의 정도 등에 따라 특정한 이주 집단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식적 권한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각종 권한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영주를 배제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한다.

동화주의 모형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 이주자들이 기존의 주류 집단과 동일한 문화와 가치를 가지도록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성향의 정책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가지는 소수 문화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수 집단 속에 융해되어 사회문화적으로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가정이나 본국 출신 모임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이의 표현이 금지된다. 이들은 자신의 출신국 생활양식과 문화, 정체성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유입국에서 ‘국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문화주의(또는 다원주의) 모형은 외국인 이주자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

표 1.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주변화 모형
정책 정향성	국가가 원하는 이주자에 대해 영주권 부여, 원하지 않는 이주자는 영주가능성 차단, 차별화하려 함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민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함	이주자의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고 정체성과 인권을 인정하려 함	이주자의 능력 일부(생산에 기여)를 인정하지만 최소한 지원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 함
정책목표	외국인 이주자의 배제 또는 최소화	외국인 이주자의 주류 사회 동화	외국인 이주자와 공존을 통한 통합	외국인 이주자 허용, 계층화
국가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소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동등한 타자성과 관용	차별적(낮은 계층적) 존재
법적 수단	단속 및 추방	동화의 제도화	제반 권리 인정	분리 방치, 규제
정주화	불가능	가능	가능	비교적 가능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다원화	계층화

자료: 박진경, 2010, p.266. 일부 수정 및 주변화 모형 추가

성 자체를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존중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정책은 서로 경합하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인종적, 문화적 세부 집단의 공동체들이 공존하는 장으로서 사회를 인식한다. 국가나 지역사회는 각 집단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집단들은 자신의 고유문화나 가치를 사회 전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의 성향에 관한 이러한 유형화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념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유의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유형화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아주 배경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와 기존 원주민 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 예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수요나 저소득층 가구들(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적령기 배우자의 부족을 충족시킴으로써 국가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고자 하지만, 실제 이들은 유입된 국가의 새로운 하위계층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자신은 사회적으로 소외·주변화되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 정책에 함의된 이러한 주변화 성향은 위에서 논의한 3가지 유형의 정책 성향들과 구분될 수 있지만, 또한 이 3가지 유형의 정책 모두에 함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적 배제 모형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복지 및 권리의 부여에 있어서 차별화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류사회에서 주변화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화주의 모형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국민됨’을 전제로 동화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내국인과 실질적으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동화주의 정책을 통해 절차적 평등(‘기회’의 평등)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출신국에서 체득한 문화적 자산의 포기는 이주한 사회에서의 정착

에 많은 불이익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해 쉽게 소외·주변화될 것이다.²⁾ 또한 다문화주의 모형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문화와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이들의 문화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자신의 문화와 가치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회적 소수집단으로 전락하여 주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성향 구분을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분석 및 평가에 원용함에 있어, 또 다른 유의사항은 이러한 구분이 다분히 ‘이념형’ 적이고, 실제 관련 정책은 이러한 성향들을 혼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적으로 동화주의적 사회, 또는 전적으로 다원주의적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 서로 경쟁하는 이념적 산물”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Martiniello, 윤진 역, 2002, 70). 또한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성향은 한 국가 내에서도 이들의 정책의 발전 과정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점에도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별, 거주지역별(그리고 출신국가별)로 다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끝으로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설문조사에 통한 분석에서 서술될 것처럼, 관련 정책에 관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실제 인식은 관련 정책 자체에 대한 분석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발전과정을 보면, 정책 부재 또는 동화주의 및 차별적 배제 모형에서 점차 다문화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0년대 외국인 이주자의 급속한 유입이 시작된 이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대해 개별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논의되고 마련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정부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걸쳐 국정과제회의 및 다부처회의를 개최하고,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혜경, 2008; 김미나, 2009).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당시 정부는 국익을 우선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을 통제·관리하고자 했던 패러다임에서 외국인

표 2. 2006년을 전후한 외국인 이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 기조	국익 우선	국익과 인권보장
외국인 처우	통제·관리	상호 이해와 존중
추진체계	개별 부처 추진체계	총괄 추진체계
정책 평가	단편적·비체계적	정책 평가(종합평가)

자료: 이해경, 2007.

이주자의 인권 보장과 상호 이해 및 존중을 전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적법이나 출입국 관리법, 재외동포법에서 규정되었던 외국인 관련 정책이 국가 차원의 '외국인 정책'으로 개선되게 되었다. 즉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관리, 난민인정, 영주, 국적 제도 등에 관한 기존 업무와 더불어 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사회통합과 같은 새로운 정책 의제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실제 외국인 이주자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는 달리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사실 이렇게 변화한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정부는 외국인 이주자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과 더불어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여전히 외국인 이주자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들에 대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관리 기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주도적 정책은 이들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2) 유형별, 지역별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의 특성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에서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우, 1991년까지는 관련 정책이 없었고, 이에 따라 관광인 친지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내에 미등록 노동자로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부족하는 한편 미등록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연수제도'를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2002년 말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미등록 노동자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80%에 달하게 됨에 따라, 200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되었고, 2007년 1월부터는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 허가제'로 단일화되면서, 최소한 명목상 고용차별에 대한 법적 금지가 마련되었다(표 3).

이러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화 과정에

표 3.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의 단계별 진화과정과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1991년 이전	1991~2003년	2003~2006년	2007년 이후
특징	정책 부재 시기	산업연수생 시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 시기	이주노동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
내용	관광, 친지 방문으로 입국한 외국인 이주자가 미등록 노동자로 정착하는 것을 방관	연수생에 대한 가혹한 시민·노동권 배제,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 미등록화 조장	고용허가제 시행,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발로 산업연수제 존속	다문화통합정책, 산업연수제 폐지와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고용차별금지

자료: 오경석(2007, 31); 고숙희(2009); 김미나(2009)에서 수정 인용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서 보면, 차별적 배제 성향이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면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으로 나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단계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은 다문화주의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여전히 차별적 배제주의를 다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근거한다(고숙희, 2009). 첫째, 이들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1년마다 간접신고하도록 하여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방지하고 있으며, 둘째, 실제 이주노동자의 선발 및 고용은 정부가 아니라 사업주가 하도록 함으로써 이의 복지 및 인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으려 하며, 셋째,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등을 허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과 일부 복지 부문에 선택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뿐 시민권 영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결혼이주자 정책 역시 본격적으로 입안·시행되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자들도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정책은 없었고, 2004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에 달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관심에 따라,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던 결혼이주자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를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 여성부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 등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방안이 마련되었고, 2008년 확대·보완되었다(김명성, 2009).

그러나 결혼이주자 정책 역시 다문화주의 정책 성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다문화주의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진다. 결혼이주자 정책이 어떠한 정책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가리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는 국적 취득의 용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여성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7년 이전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으나 결혼 이주자가 증가하게 되자 1998년 절차를 까다롭게 하였다가 그 이후 점차 쉽게 개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정책 유형은 차별적 포섭/배제나 다원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거의가 동화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적응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국적취득절차를 간단하게 한 것도 그러한 목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고숙희, 2009, 164).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정책은 다소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유형들에 관한 정책 역시 2000년 중반 이전까지는 실질적이고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직 이주자들은 기업활동, 연구기술, 외국어 강사, 연예 및 스포츠 관련 직종 등 다양한 세부 유형들을 포함하며, 이들에 관한 지원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세부유형들 간 차이로 인해 동일한 정책으로 공동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는 단순 이주노동자에 비해, 많은 정책적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출입국과 관련된 영주권 제도이다. 단순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해외 투자자 및 교수, 연구자, 기업가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이주자에게는 3년 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 신청자격을 부여한다(임석희·송주연, 2010). 그러나 최근 ‘고급 인력 순환’론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전문직 이주자들은 어느 한 곳에 오래 정착하기보다는 순환적으로 초국적 이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권기홍·이홍재, 2005). 이러한 점들에서 전문직 이주자들

표 4. 외국인 여성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 절차의 변화

시기	1948~1997년	1998~2002년	2003~2008년	2009년 이후
취득 방식	혼인 사실의 확인 만으로 국적 부여	혼인 신고 2년 경과 후 귀화시험 합격으로 국적 부여	혼인 신고 2년 경과 후 법무부 심사로 국적 부여	귀화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으로 국적 부여

주: * 사회통합교육: 이민자사회 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대 200시간 이수로 필기시험 면제

자료: 고숙희(2009)에서 정리.

에게는 결혼이주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쉽게 영주권이 부여되며 이들에 대한 정책은 동화주의라기 다문화주의의 성향을 보이지만, 이는 관련 정책의 특성보다는 전문적 이주자 유형이 내재하는 속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역시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는 다른 성향을 보인다. 이들에 관한 정책은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립하고 2008년 중장기 목표를 확대하여 수정된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본격화된다. 이 프로젝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영어전용 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설 지원,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및 참가, 한국 유학 안내시스템 운영, 대학-기업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지원 등을 포함하여 8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유학생 유치에 대한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시각의 과제들로 판단된다(이태식 등, 2009). 달리 말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이들이 연구 목적을 달성한 후 본국으로 귀국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후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책은 실제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이 이들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점이다(황미경, 2010). 이러한 차이는 정부가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이한 정책적 성향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이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가의 의문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한 국가 내에서도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와는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지방 행정을 주도하는 경우,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역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혁신 지자체들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앞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역별로 독자적인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최병우, 2011).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제시된 정책을 집행 또는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이 지역별로 상이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상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로, 임형백 등(2009)은 농촌지역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및 관련 정책이 서구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한국 농촌은 결혼이민자에 의해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거주노동자 등 다른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보다는 결혼이주자 중심으로 논의[와 정책]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임형백(2009, 71)은 "도시지역의 단기거주 [이주]노동자는 개인적으로 거주하거나 이민자 집중 거주지를 형성하여 거주한다. 특히 이민자 집중거주지를 형성할 경우 외형적으로는 서구의 다문화사회와 유사하게 된다. --- [한편] 한국의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보다 빨리 한국문화, 가치관, 언어에 동화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구와 같은 다문화주의 모형보다는 동화모형의 적용이 보다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농촌 거주 결혼이주들은 빈곤과 연계된 이주경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에 정착한 이주자들에 비해 열악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사실이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다문화사회론 전환 과정에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의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위험과 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유형별로 보다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경우 단기거주 이주노동자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큰 요인이고 때문에 다문화주의 정책이, 농촌지역은 결혼이주자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큰 요인이고 때문에 동화주의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것(또는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농촌지역=결혼이주자=동화주의 정책, 도시지역=이주노동자=차별적 배제 정책으로 이원화시키고 있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은 총 혼인건수의 17~18%로, 도시 지역 8~9%의 거의 두배에 이르지만, 전체 결혼 이주자들 가운데 도시 거주자들이 농촌 거주자들 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즉 2008년 서울 및 지방 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의 비율은 41.7%이며, 경기도 거주 비율은 23.2%이다)(최병우 등, 2011, 130-132).

3) 외국인 이주자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은 실제 이들을 시행하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해 시행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매우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관리/통제하거나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실제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하게 과정을 직접 접촉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와 다양한 유형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되며, 또한 이주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등의 관련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후원활동을 하는 여러 기관들을 포함한다(그림 1).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이민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다. 1961년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조직이 이관된 후 출입국 관리국으로 존속하다가 2007년 5월 10일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명칭과 조직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출입국 관리 및 체류관리 업무에 더하여 이주자들의 사회문화적 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확장되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시행하는 관련 정책들에 의해 통제 및 지원을 받게 된다(표 5). 특히 2008년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을 총괄하고 관련 법의 주관시행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이 시행하는 정책들은 여러 구체적 사항들로 구성되겠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 가운데 하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배분되는 중앙정부의 부처는 중소기업청을 포함하여 9개 기관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1년 1751억원으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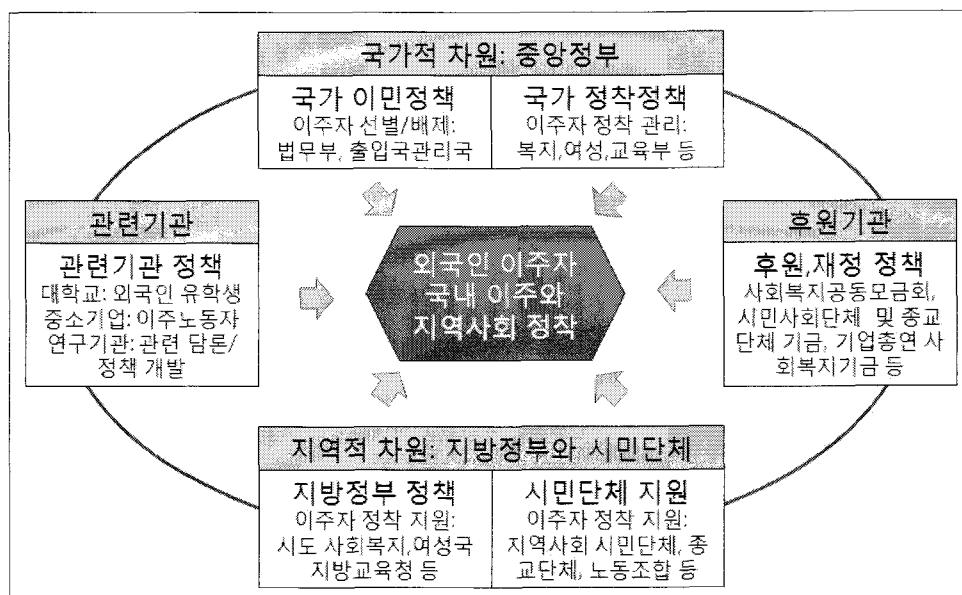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 기관 및 단체

표 5. 정부부처별 주요 담당 정책

부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업무	외국인 이주자 정책 총괄	다문화 가족 복지 지원	이주 여성 지 원 및 인권	외국인 노동 자 정책	이주자 자녀 학 교 교육 지원	다문화성 제고, 한국어교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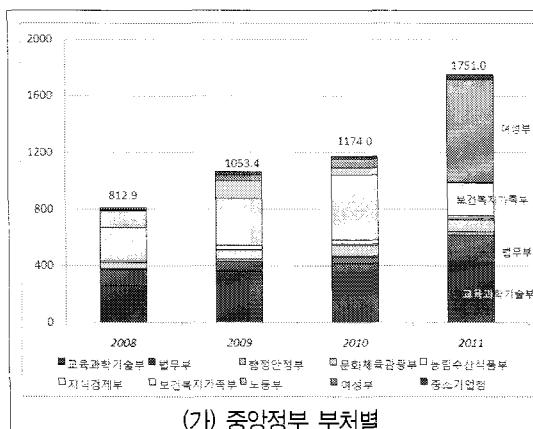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홍기원, 2008 수정(여성부 추가) 인용

년 812.9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그림 2 (가)). 2008년 가장 큰 예산이 배분된 부처는 외국인 학교 건립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이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순이었으나, 2011년에는 여성부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고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순이며, 노동부에 배분된 예산은 엄청나게 줄어서 2억원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예산 배분 부처가 되었다(유영철, 2011). 여성부에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 가장 적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실제 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정부는 결혼이주자들의 동화를 위한 지원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배제하면서 방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홍기원, 2008).³⁾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배당된 예산들은 자체 내에서 수립한 정책들의 시행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을 통한 위탁사업의 시행에도 소요된다. 예로

여성가족부는 2008년 전국에 38곳에 개설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센터를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은미 등, 2008). 농림부는 10개 도, 40개 시군지역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방문교육 도우미를 10명씩 선발하여 교육자·인당 3명의 학습자를 교육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지정하는 4개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부처의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지원단체들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각종 사업들(특히 결혼이주자 지원 사업)과 때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자자체가 실제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사업들(특히 이주노동자 관련 시설과 지원 활동)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는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출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하고 국가의 법, 제도적 개선과 지원



자료: 유영철 2011,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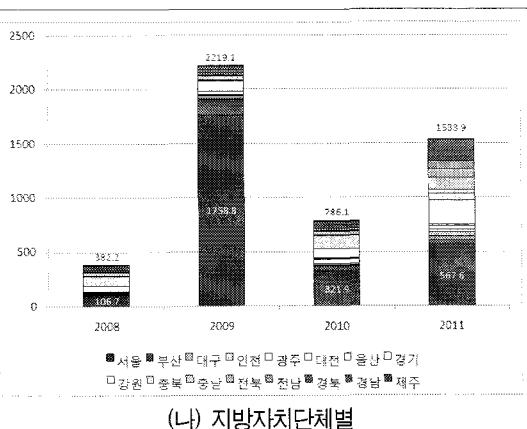


그림 2. 외국인 이주자 정책 관련 중앙정부 부처별 및 지자체별 예산배분 추이 (억원)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정책의 입안,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등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이들의 정착 생활을 위한 정책과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사회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주·다문화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김선미, 2009, 221).

지자체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위임한 바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제정한 조례들에 근거한다.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들은 실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유영철, 2011). 첫째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등의 명칭으로도 제정되어 있으며,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 지원 정책을 총괄 규정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가장 많은 지자체들(광역: 9개; 기초 111개)이 제정·입법화한 조례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조례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표 6 (가)). 둘째는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 14개, 기초 지자체 77개에서 제정되어 있다(표 6 (나)). 셋째는 ‘외국인 인권조례’

는 외국인 지원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불법체류자 등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소수자보호 조례라는 점에서 구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2009년 이후) 제정되기 시작한 조례이긴 하지만, 2010년 12월 기준으로 총 6개로, 이 가운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별개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 남구와 광산구 3개에 불과하다.

각 지자체들은 이러한 조례들에 근거하여 외국인 이주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통교부세와 총액 인건비 산정 수요에 등록 외국인 수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교부금에 주로 의존한다(이혜경, 2009).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즉 지자체들의 관련 예산을 합치면, 2008년 382.2억원에서 2009년 2219.1억원으로 580%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786.1억원으로 전년대비 282%나 감소했고, 2011년도에는 1534억원으로 다시 전년 대비 50% 정도 증가했다(그림 2 (나)). 지자체 외국인 이주자 관련 예산은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은 주로 지역센터 확충, 신설 등 인프라 시설 투자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 농촌지역 등에 결혼 이주민 여성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활성화로 예산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유영철, 2011).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상황에서 보면 몇 가

표 6. 외국인 이주자 관련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2010년 12월 기준)

(가)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	0	0	0	1	1	1	1	0	1	0	0	1	1	1	0	1	9
기초	11	8	5	3	3	1	2	11	5	7	7	9	21	15	3	0	111

(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	0	1	1	1	1	1	1	1	1	1	0	1	1	1	1	1	14
기초	7	2	2	4	5	2	2	7	4	4	1	3	14	14	6	0	77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http://www.elis.go.kr>), 유영철(2011, 123-124)에서 인용

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각 지자체의 관련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성향처럼 기본적으로 동화주의 또는 차별적 배제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에 바탕이 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에 확인될 수 있다. 이의 내용은 “이민자 집단의 문화를 인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다문화주의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집단 성장, 통합주의 관점”(최종렬, 2010)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관련 정책 역시 다분히 사회통합에 초점을 둔 정책, 즉 동화주의 또는 차별적 배제주의 성향의 변형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조례의 제정과 예산이 편성이 자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지자체의 관련 예산들은 변동 폭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관련 예산이 2008~2011년 사이 전체 지자체 예산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북의 경우 이 기간 평균 2.7%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 예산을 제외한다면 외국인 이주자 관련 예산은 3년을 합쳐 2.8억원에 불과했다. 지자체별 편차는 조례 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울시 거주 등록외국인은 구로구와 인접한 영등포구, 관악구 등에 많이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거주외국인 관련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거주외국인 복지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성 표명의 입장과 중점 시책의 특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황미경, 2010, 239).

외국인 관련 정책과 지원활동에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민간 단체에 의한 외국인 이주자 지원 활동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와 때를 같이 한다. 즉 송종호(2006)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활동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2년 5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상담활동을 시작한 뒤였다.

이주 노동자 문제에 먼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종교단체들로, 이들은 미사나 기도 등을 통해 종교 활동을 같이 하면서, 주로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하면서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와 여론화 작업 등을 병행했다. 종교단체들의 활동은 시민 노동단체들로 확산되어,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이 외국인 노동자 상담 및 지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중국노동자센터, 구리노동상담소 등),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인 이주자 지원 단체들의 활동은 2000년대 이후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지원 단체의 수로 보면, 2000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90개로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시민운동단체 5개, 의료봉사단체 4개, 법률서비스단체 2개를 제외하면 모두 종교단체들이었다(송종호, 2006). 그 후 지원단체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초 경기도에만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6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ww.cme.or.kr/home/files/111.xls).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 지원 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이 급증한 것은 이들의 국내 유입이 계속 증가하여 관련단체들의 관심을 고양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다양한 위탁 사업들을 수행하는 단체들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 지원 단체들은 이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의료 지원, 쉼터 운영, 소식지 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상담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의료, 산업재해, 출국 관계, 폭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 지원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특히 결혼 이주자) 관련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기관들(중앙정부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 민간단체 시행 사업)에 의해 수행됨에 따라, 전북 지역 기관별 결혼이주자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주여성교육사업, 한국문화체험 등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은미 등, 2008).

이와 같은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외국인 이주자 지원 활동은 기본적으로 결혼이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주자와 이주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제대로 개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지원책으로는 전문 인력 취업제도에 근거를 둔 각 부처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지원기관으로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인 정부 부처와 그 산하 기관 및 해당 직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해 시행되는 지원프로그램에는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사업(brain pool program), 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 외국인 과학자 post-Doc 지원사업, BK 21 사업, 원어민 영어 강사초청 사업(Fullbright 프로그램), 각 종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권기홍·이홍재, 2005; 임석희·송주연, 2010).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 및 지역 적응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5년부터 대학의 영어전용강좌 및 한국어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5~2007년 사이 총 30개 대학에 1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기도 했다.

3. 관련 정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외국인 이주자의 인식

1) 관련 정책의 기본 성향에 관한 인식

국내로 이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관련 정책들은 다양한 내용과 시행 방식을 가지지만, 이들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즉 동화주의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과 분리되거나 또는 이들 모두에 실제 함의된 주변화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는 관련 정책들은 완전히 베타적이거나, 또는 다문화주의적이기 보다는 이들을 적절히 혼합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들은 이들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차별적 배제주의, 결혼이주자는 동화주의, 전문직 이주자는 다문화주의의 성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7. 정책 성향에 대한 이주자 유형별 인식
(5점 척도 값)

	무조건 동화	가능한 배척	다문화 인정	소수 주변화
전체	3.15	2.75	3.18	2.93
결혼이주자	3.19	2.45	3.18	2.72
이주노동자	4.02	3.03	3.26	3.15
전문직이주자	2.59	2.92	2.98	3.10
외국인유학생	3.10	2.68	3.25	2.83

주: ‘아주 그려함’=5; ‘상당히 그려함’=4; ‘저그려함’=3; ‘별로 그려지 않음’=2; ‘전혀 그렇지 않음’=1.
(이하 표들의 5점 척도 값에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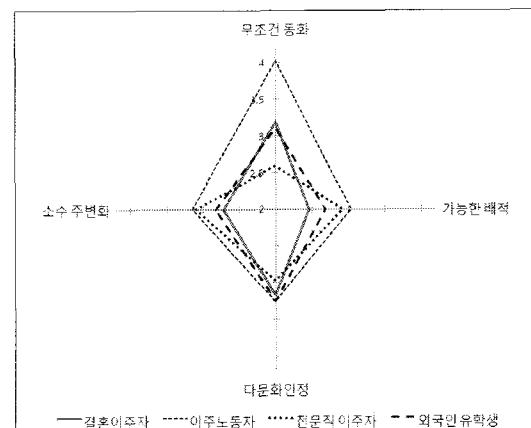


그림 3. 정책 성향에 대한 이주자 유형별 인식

그러나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관련 정책의 성향에 관한 인식은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외국인 이주자들 전체로 보면, ‘다문화 인정’ 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5점 척도 값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무조건 동화’, ‘소수 주변화’, ‘가능한 배척’의 순이었다(표 7, 그림 3).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별로 5점 척도 값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앞선 정책 내용에 관한 분석에서처럼 ‘무조건 동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지만, ‘다문화 인정’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혼이주자들이 한편으로는 정착하게 된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사회적 제도나

문화 양식에 동화되도록 요구받지만, 또한 이러한 동화를 위한 정부(중앙 및 지방) 및 민간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과 한국문화체험 사업들을 다문화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여, 캄보디아, 25세, 2006년 입국):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정책지원이 꼭 필요하다. 한국말을 다 배우기 전에는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를 아는데 속도를 내도록 우리말[출신국의 글이나 언어]로 된 정보매체 등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한국 사회와 그 정책들이 '차별적 배제'보다는 '무조건 동화'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결혼이주자들 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또한 '다문화 인정'에서도 다른 모든 유형들보다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응답하였다는 점도 다소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이들이 이미 국내로 들어와서 노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보다는 한국적 질서와 문화에 따르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는 '무조건 동화'에 대한 인식은 예상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지만, '다문화 인정'보다도 '소수 주변화'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들이 소득이나 신분 능력에 따라 계층적으로 주변화 되기 보다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포섭되지 못한 채 문화적으로 주변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다문화 인정'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았지만, '무조건 동화'에 대한 인식도 다소 높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학 생활에서 한편으로 자신의 문화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 및 연구 과정에서 한국어의 사용 등으로 동화를 요구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에 따른 관련 정책의 성향에 대한 인식을 거주지역별 및 출신국적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해 보다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결혼이주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비슷한 5점 척도 값을 보였던 '동화적 성향'과 '인정적 성향'에 관한 인식은 광주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역들에서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두 가지 성향에 관한 인식에서 전체와는 다르게 역전되는 경우는 없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관련 정책의 분석에서 배타적 또는 주변화 성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설문조사에서 이 두 가지 성향들 가운데 '주변화 성향'이 더 높게 인식되었다(표 8). 출신국적별로 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자들이 '배타적 성향'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또한 이 성향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응답자들의 경향과는 달리 '주변화 성향' 인식보다도 더 높았다. 반면 중국 국적의 이주자들은 '배타적 성향' 및 '주변화 성향' 모두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표 9), 이는 중국 출신 이주자들이 자

표 8. 이주정책의 동화적/인정적 성향에 대한 거주지역별 결혼이주자의 인식(5점 척도 값)

	응답자수	동화적 성향	인정적 성향
전체	393	3.19	3.18
서울	60	3.33	3.29
경기	62	3.33	3.31
대구	74	3.19	3.12
경북	71	3.11	3.06
광주	54	2.96	2.61
전남	72	3.22	3.19

표 9. 이주정책의 배타적/주변화 성향에 대한 출신국별 이주노동자의 인식(5점 척도 값)

	응답자수	배타적 성향	주변화 성향
전체	345	3.03	3.15
중국	119	2.65	2.86
필리핀	63	3.31	3.52
인도네시아	35	3.42	3.06
베트남	63	3.03	3.22
스리랑카	22	2.86	3.41
기타	43	3.12	3.24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신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중국 출신 이주자들에는 연변 출신 한국적 이주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에 관한 인식

이러한 정책 성향에 관한 인식을 배경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 정책에 대한 인식은 개별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형 및 거주지역, 출신국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결혼이주자의 경우, 이들과 관련된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인식에서, 출입국 관련 사항들, 즉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의 외국인 등록’과 ‘체류 기간 연장 및 국적 취득 요건’과 지역사회 정착 관련 사항들, 예로 ‘국민 건강 보험’이나 ‘한국어 교육서비스와 아동 양육 지원’에 관한 정책의 내용에 대해 대체로 비슷하게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그러나 이러한 인지의 정도는 거주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결혼이주자라고 할지라도, 광주 거주자들은 이주 및 체류 관련 사항에서, 경북 거주자들은 정착과정에 관한 사항들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며, 반면 서울 거주자들은 4개 항목 모두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결혼이주자들이 이러한 4가지 사항들에 관한 인지의 정도는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이들은 앞으로 계속 한국 사회에서 살아 갈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착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인식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항은 설문조사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심층면접 과정에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

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사례 2). 또 다른 문제이지만, 결혼이주자들은 자신의 한국인 가족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정책 내용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의 수혜 여부가 배우자나 가족들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사례 3).

사례 2 (여, 중국, 27세, 2008년도 입국): 여성 긴급전화나 보호시설이 있는 것은 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때로 남편이 화도 내지만, 폭력을 쓰는 경우는 없어서 긴급전화를 써 본 적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자 일부라도 위급한 경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사례 3 (여, 필리핀, 25세, 2008년도 입국): 본인이 아픈 경우 그냥 견딘다. 남편이 건강 보험료를 오래 납부하지 않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관련 정책 사항들의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관한 문항들에서, 전체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지했으며, 특히 ‘노동자로서의 노동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표 11).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지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광주와 서울 거주자들은 모든 항목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경기와 경북 거주자들은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미등록(불법) 거주자의 경우는 관련 정책의 개선에서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이들은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미등록 노동자 강제 조치 완화’ 등에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다. 특히 이들은 미등록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도 겪고 있음이 심층면접의 결과로 알 수

표 10. 지역별 결혼이주자의 관련 정책 내용 인지 (5점 척도 값)

	전체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응답자수 (명)	374	53	62	73	70	53	63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의 외국인 등록	3.06	2.81	2.90	3.08	3.24	3.40	2.89
체류 기간 연장과 국적 취득 요건	2.98	2.67	3.00	3.05	3.06	3.15	2.92
국민 건강보험	2.95	2.74	2.97	2.92	3.07	2.96	3.00
한국어 교육서비스와 아동 양육지원	3.09	2.60	3.00	2.99	3.50	3.09	3.27

표 11. 지역별 이주노동자의 관련 정책 사항들의 개선 필요성 인지 (5점 척도 값)

	전체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응답자수(명)	331	31	60	72	59	45	64
체류 기간 연장	3.97	4.19	3.75	3.96	3.75	4.42	3.95
자유롭게 직장 옮기기	3.89	4.19	3.85	3.70	3.56	4.27	4.06
감시와 횡포 대응 제도 마련	3.81	3.97	3.66	3.78	3.70	4.24	3.68
미등록 노동자 강제 조치 완화	3.84	4.07	3.47	3.90	3.62	4.27	3.91
노동자로서의 노동권리 보장	4.02	4.30	3.95	4.10	3.89	4.20	3.84
지역주민으로서 생활권 보장	3.91	4.03	3.74	3.97	3.75	4.27	3.86
한국 국적 취득	3.71	4.13	3.58	3.35	3.40	4.33	3.89

있었다(사례 4).

사례 4 (남, 중국, 41세, 1999년 입국, 미등록): 한국에 들어 온지 10년인데 아직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없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 별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죄인처럼 짓겨 다닌다. 한국인들이 마음을 닫고 있어 가까이 가지 못한다. 우리도 그들만큼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산 활동에 대한 권리 주장은 더구나 어렵다. 더구나 직장 내의 한국동료까지 우리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 그냥 동료로만이라도 인정하면 좋겠다. 또 아플 때 병원을 가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돈이 많이 듈다. 제발 건강 보험 혜택을 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공정함과 평등함을 부여하면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하고 행복할 것 같다. 언제나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듈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자와 이주관련 법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개선’, ‘영어 구사 능력의 향상’ 등의 순이고, 실제 정착 과정에 필요한 교육, 주거 등 생활환경의 지원 요구나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나 사회적, 정치·행정적 측면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4). 이러한 응답의 특성에서 보면, 전문직 이주자들은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들이나 한국인들의 태도와 능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자문제의 개선’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비 및 장학금과 같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며, 반면 의료보험이나 주거문제 등 정착 과정과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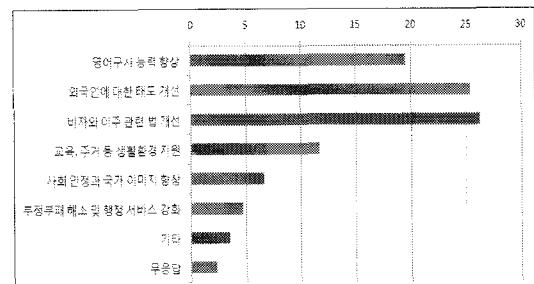


그림 4. 전문직이주자 관련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주요 사항(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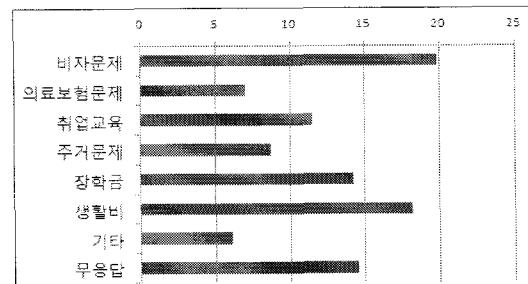


그림 5.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단위: %)

3) 지원 단체 및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의 성향과 그 구체적 내용이 실제 전달되는 지원 프로그램들의 상당 정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도는 지원 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 기관이나 단체에 관한 이용 여부는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훨씬 낮게 나타났다(그림 6).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련 지원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지원 기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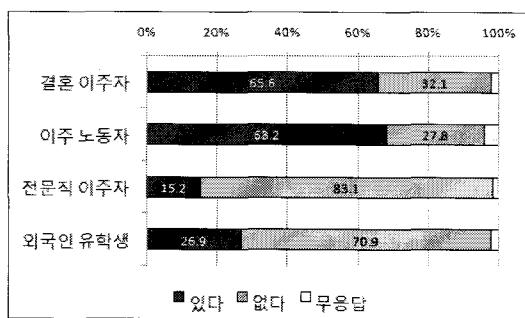


그림 6. 지원기관 이용 유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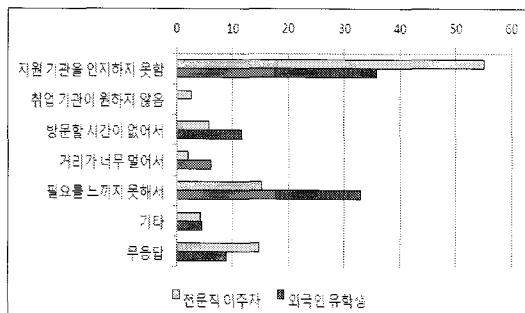


그림 7. 지원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단위: %)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들은 외국인 이주

자들의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유형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인지 정도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자의 경우, 제시한 모든 지원 프로그램들에 관한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순서별로는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⁴⁾ 거주지 역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지만, 경북 거주자들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항목과 관련시켜 보면, ‘한국어 교육’은 대구에서, ‘한국 요리 및 전통 예절 교육’은 경북에서, ‘가족관계 및 법률 상담’은 광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2).

이주 노동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결혼 이주자와 비슷할 정도로 지원 단체의 활용 정도가 높은 것은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많고, 이들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지원단체들로서는 종교 단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운동단체, 교육·교양지원(일반 지역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그리고 정부지원단체의 순이었다(표 13).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지원단체의 종류는 출신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자들은 종교단체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국적자들은 교육교양단체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이주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법률상담(22.0%), 한글교육 지원(21.7%)로 비슷하게 높고 다음으로, 노동자권익 교육(17.0%)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표 14). 지원 프로그램의

표 12. 지역별 결혼 이주자의 지원 프로그램 필요 인지 (N=393)

지원 프로그램	전체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주
한국어 교육	4.57	4.53	4.60	4.64	4.57	4.49	4.58
한국 요리 및 전통 예절교육	4.37	4.23	4.47	4.29	4.56	4.25	4.37
컴퓨터교육 및 취업지원	4.33	4.23	4.44	4.34	4.47	4.26	4.16
주요 장소(시장, 유적 등)교육	4.16	4.21	4.26	4.26	4.26	3.83	4.07
가족관계 및 법률 상담	4.11	4.17	4.12	4.08	4.14	4.23	3.97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	4.42	4.35	4.37	4.39	4.53	4.43	4.41
자녀 양육 등 방문 서비스	4.38	4.29	4.37	4.26	4.52	4.40	4.40

표 13. 국적별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지원 단체의 종류 (단위: 명/%)

	응답자수	시민운동 단체	노동운동 단체	종교단체	교육·교양 지원단체	정부지원 단체	기타	무응답
전체	345	6.4	16.2	42.3	10.1	3.5	9.3	12.2
중국	119	3.4	7.6	51.3	5.0	0.8	19.3	12.6
필리핀	63	9.5	12.7	61.9	1.6	6.3	1.6	6.3
인도네시아	35	11.4	22.9	8.6	25.7	11.4	5.7	14.3
베트남	63	7.9	20.6	34.9	12.7	3.2	6.3	14.3
스리랑카	22	13.6	27.3	36.4	22.7	0.0	0.0	0.0
기타	43	0.0	27.9	30.2	14.0	2.3	4.7	20.9

표 14. 거주지역별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단위: 명/%)

	응답자수	한글 교육	법률상담	보건의료 건강지원	노동자 권익 교육	한국문화 교양교육	지역사회 정보교육	기타	무응답
합계	346	21.7	22.0	10.1	17.1	9.2	2.3	6.6	11.0
서울	34	11.8	23.5	11.8	29.4	5.9	0.0	14.7	2.9
경기	61	31.1	26.2	14.8	18.0	3.3	1.6	1.6	3.3
대구	73	27.4	31.5	5.5	21.9	4.1	4.1	2.7	2.7
경북	69	31.9	24.6	5.8	21.7	1.4	1.4	2.9	10.1
광주	45	11.1	0.0	20.0	15.6	17.8	2.2	11.1	22.2
전남	64	7.8	18.8	7.8	0.0	25.0	3.1	12.5	25.0

종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거주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 거주자는 노동자 권리 교육, 경기와 대구 거주자는 법률 상담, 경북 거주자는 한글 교육, 광주 거주자는 보건의료 건강 지원, 전남의 경우는 한국문화교양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는 지원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설문조사한 전문직 이주자들 가운데 82.2%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지원단체가 있다고 한 경우에도 직장을 표시한 응답자가 11.7%를 차지했다. 지원단체가 없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 거주자들이 91.4%, 서울 거주자들이 90.8%로 매우 높았고, 경기도 거주자들이 50.0%로 가장 낮았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 일상생활 체험예로 은행, 행정기관 등의 이용) 등의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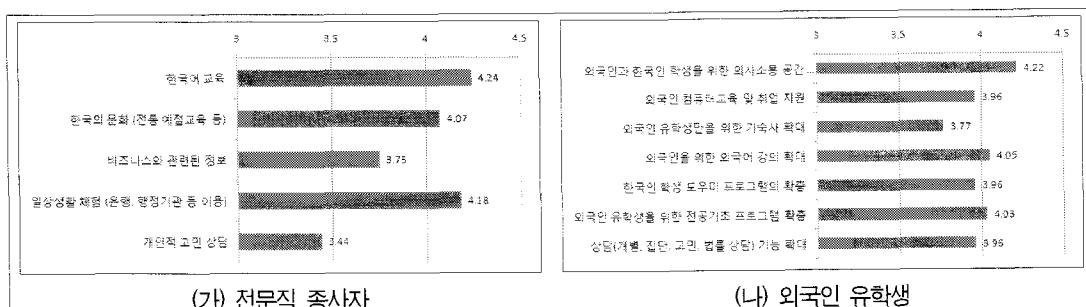


그림 8 저문자 종사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인지(5점 척도 값)

높게 나타났다(그림 8 (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이들을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단체가 많지 않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제유학생센터와 대학 내 유학생센터를 포함할 경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비율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이용이 55.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문화 탐방을 위한’ 이용이 46.6%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한국인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의 마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강의 확대 및 전공기초 프로그램 확충의 순으로 제시되었다(그림 8 (나)).

4.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함에 따라 단편적으로 시행되었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은 2000년대 중반에 와서 나름대로 정책 성향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다문화주의 지향적 성향을 가지면서, 지원 프로그램들도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착 생활에 직접 필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은 첫째, 다문화주의라기 보다 동화주의적 성향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둘째,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은 중앙·정부·지자체·시민사회단체들 간 체계적인 협력관계라기보다는 분절적이고 중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실제 시행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사회 통합 문제에 편향되어 문화적 다양성과 시민적 권리를 제대로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성향은 동화, 차별적 배제, (의사적) 다문화, 그리고 이들에 합의된 주변화 성향에서 사회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반을 둔 진정한 다

문화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게 되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전반적으로 동화 모형(황미경, 2010) 또는 차별적 배제 모형(원숙연, 2008)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박진경(2010)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선별된 일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에 해당되어 차별적 배제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주장한다. 또한 유형별로 결혼이주자는 동화 성향을, 이주노동자는 차별적 배제 성향을 띠고 있다. 이점은 예로 임형백(2009), 고숙희(2009)의 주장, 즉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동화 정책을,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포섭/배제 및 비공식적 다원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주장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유형별로 다른 정책 성향으로 인해, 정부의 이주자 정책은 다문화주의라는 포용적인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분할통치술의 일환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오경석, 2007).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공간)적 주변화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즉 한국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기존의 단일민족·단일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동화주의 또는 사회적 갈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별적 배제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학력의 상승과 3D업종 등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저임금 비숙련노동력의 부족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도시나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가구의 혼인 적령 배우자의 부족 등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은 국내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부나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무산계급으로 사회계층적(또는 계급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관련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주변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관련 정책이 동화주의적 성향을 가지거

나 차별적 배제의 성향을 가질 경우, 이러한 주변적 성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설령 다문화주의의 성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정책적으로 강한 개입이 없다면,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주변화될 것이다(그림 9).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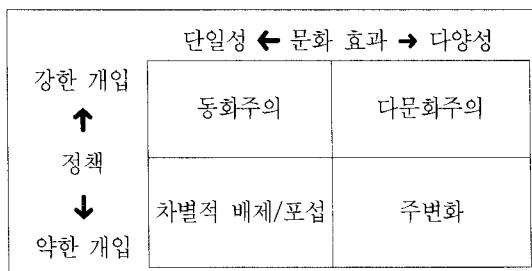


그림 9.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의 성향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정책의 성향이 진정하게 다문화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적으로 주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공간)적 평등과 정의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연구자나 국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이 용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정의와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사회정의의 강화에 대한 포괄적 논의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윤진 역, 2002, 70; 136). 최근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인정의 정의’는 상호간에 애정 어린 배려와 존경 및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이러한 상호 인정은 소득이나 사회적 부의 분배적 정의와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최병두 등, 2011, 48–52).

둘째,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시행 또는 전달체계는 국가 주도적이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분절적, 경쟁적, 중복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화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이 기본적으로 관주도적, 특히 국가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김희정, 2007). 박천웅(2008)에 의하면, 국가

주도의 다문화정책의 핵심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를 관리하되, 거주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사회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과 국민 간 상호문화를 이해·존중하는 사회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익’과 ‘관리’가 우선시되는 다문화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주도적 정책도 다문화주의의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국가주도적 다문화주의는 시민(사회)주도적 다문화주의와는 구분된다. 즉 “정부주도의 다문화주의가 사회통합, 국가발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인권 및 권리 향상이라는 목적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김선미, 2009, 2004).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생활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된다(윤인진, 2007).

국가주도적 외국인 이주자 정책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이주 정책과 지역사회 정책에 관한 정책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수립되지 못하고 분절된다는 점이다(홍기원, 2008).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부처간 경쟁적 시행으로 인해 복지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등이 비통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적 지원 정책이 사회 전체와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입된 이주민에게 한정된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책의 대상을 협소하게 정의하게 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주민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국가주도적 정책의 시행과 정에서, 지자체 및 시민단체들의 지원 정책이나 활동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중앙 및 지방)가 민간단체를 통해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부분 공모를 통한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박천웅, 2008). 바로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김선미, 2009)(그림 10).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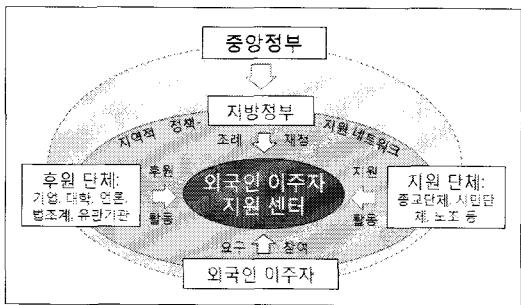


그림 10.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지역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단체들로 구성된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지원 네트워크 방안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강휘원, 2006; 김선미, 2009 등).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분권형 외국인 이주자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라고 할지라도,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유영철(2011)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분권형 정책 모형은 3가지 세부 유형, 즉 첫째 신자유주의에 연원을 둔 시장주의적 성향의 이주자 정책, 둘째 중앙정부의 의지와 부처가 연계의 부족으로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이주자 정책, 셋째 특정 지역에 이주민의 급증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이주자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도시 거버넌스 일반이 신자유주의에 연원한다는 점에 대해 최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권형 외국인 이주자 정책-지원 거버넌스의 유의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은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또한 다문화축제), 주거·의료지원, 해고 및 폭력 피해(법률)상담 등 단편적이고 사회문화 편향적이며 동화-촉진적 내용 중심에서 다문화교육, 지역 정체성 함양, 종합적 복지 보장, 고용 및 시민권 구축 등 지속적이고 정치경제적 측면도 포함하며 상호인정적 내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지원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전통

문화 관람, 전통요리 교실 등), 생활문화대회(노래 경연, 백일장) 등 몇 가지 형식으로 매우 단순하고 문화적 측면에 편향되어, 지역별 독창성이 없는 일률적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홍기원, 2008). 이러한 점은 고은미 외(2008)에 의한 전북 지역 기관별 여성결혼 이주자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물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을 막론하고 한글교육에 가장 높은 또는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문화체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교육이나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한국 언어를 배우고 한국적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외국인 이주자의 소수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교류와 소통을 간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보다는 분리된 상황을 고착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거나, 직장 해고 및 가정 폭력과 같은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과 법률 구제 노력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일회적 행사나 단편적 지원으로 끝나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매우 많을 것이며,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사회·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적 측면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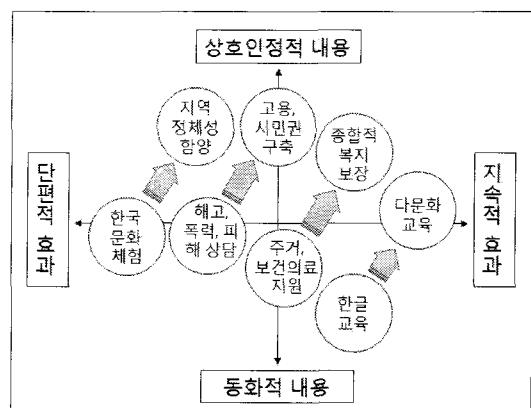


그림 11. 외국인 이주자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과 전망

주자를 위한 다문화방송과 통역 제도 및 외국인 이주자 자녀들의 정체성을 위한 계승어(본국어) 교육 등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구성원 의식의 함양을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 지원, 고용 촉진 프로그램과 고용 차별에 대한 시정 조치,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종합적 복지 보장과 시민권 보장 등을 포함 할 수 있다(그림 11).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 지원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화적 내용에서 상호인 정적 내용으로, 단편적 효과에서 지속적 효과를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 론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 속에서 상품이나 자본, 기술뿐만 아니라 노동의 초국적 이동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국제적 이동은 상품, 자본, 기술과 같은 다른 생산요소들의 이동과는 다른 측면을 가진다. 즉 특정 국가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은 상품이나 자본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기존 주민들과 갈등 관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빈곤이나 다른 이유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들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화 과정에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선진)국가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정착 과정에 대해 한편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흔히 동화주의 또는 차별적 배제주의의 성향을 가지며, 설령 일부 선진국들이나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처럼 다문화(주의)정책이 강조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이 정책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을 받아들여 국가적 또는 지역적 필요를 충족시키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과 여타 사회공간적 문제들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들을 사회적

으로 주변화시켜서 주류사회와의 하위계급(또는 계층)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전략을 암묵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 정책에 있어 이러한 주변화 성향(또는 모형)은 기존의 3 가지 모형과 분석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들 모형에 모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책은 또한 이들의 유형, 즉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실제 결혼이주자는 동화 정책, 이주노동자는 차별적 배제 정책,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다소 변형된 다문화 정책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과는 무관하게 (물론 유형 간에 다소간 차이를 보일지라도)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이러한 성향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도 관련 정책을 차별적 배제보다는 동화주의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유형을 막론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한글교육’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한글 교육은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한글교육이나 한국문화체험은 한국사회에 적응(즉 동화)을 요구하는 일방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의사적) 다문화주의, 그리고 이들에 합의된 주변화 성향에서 사회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반을 둔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시행 또는 전달체계는 국가 주도적이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단체들에 의해 분절적, 경쟁적, 중복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화된 거버넌스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 지원 프로그램들은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또한 다문화축제),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주거·의료지원, 해고 및 폭력 피해(법률)상담 등 단편적이고 사회문화 편향적이며 동화-축진적 내용 중심에서 다문화교육, 지역 경제성 함양, 종합적 복지 보장, 고용 및 시민권 구축 등 지속적이고 정치경제적 측면도 포함하는 상호인정적 내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

- 1) 흔히 다문화(주의)정책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또한 권리적 관점(비동적 다문화주의, 즉 정부의 관점)과 인권적 관점(능동적 다문화주의, 즉 시민사회와의 관점)으로 분류되거나(윤인진, 2008; 최병두, 2009), 또는 자유주의(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 조합주의(다양성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지원과 참여를 보장), 급진주의(소수자에게 자신의 생활부문에서 정책 결정의 자결권까지 허용)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구견서, 2003).
- 2) 뿐만 아니라 동화주의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동화과정에서 외국인 이주민은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민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도 변화하게 되는 양방향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떠한 정책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입국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지만, 또한 동시에 외국인 이주자들도 유입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상호관련적(변증법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3) 홍기원(2008)에 의하면,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교육 사업과 복지 혹은 여가 차원에서의 문화프로그램을 다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정도로, 다문화사업의 궁극적 서비스 수혜의 대상을 외국인 근로자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정부시스템 의존 정도는 매우 낮다.
- 4)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예로, 조석주·이상묵, 2008)과 비교될 수 있는데, 특히 도시/도농복합/농촌 등 거주지역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이 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큰 차이가 없으며,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부표 1).

5) 이러한 주변화 성향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예로 한승준·박치성(2011)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초기에는 모두 '일탈집단'으로 간주하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의존집단으로 인식을 변화시키는 반면,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여전히 일탈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문현

- 강희원, 2006, 한국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고숙희, 2009, 한국정부의 다문화사회 대응정책: 외국인 거주유형별 정책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3), 149-171.
- 고은미·이수라·장미영·소강준, 2008, 국제결혼 방안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전북지역 기관별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4, 111-138.
- 구견서, 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가을호*, 29-53.
- 권기현·이홍재, 2005, 외국인 과학기술 고급인력 국내 유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의 분석 및 평가 -주거, 자녀교육, 의료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2), 79-108.
- 김명성, 2009,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8, 5-29.
- 김미나, 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47(4), 193-223.
- 김선미, 2009, 이주·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

부표 1. 지자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주지역별 결혼이주자의 인식

(단위: 명/%)

합계	한글교실 운영	영농교실 운영	남편교실 운영	정보프로그램 강화	응급구호 체계 확립	전문상담 교실 운영	화합프로그램 강화	기타
도시	171(100)	80(46.8)	2(1.2)	28(16.4)	29(17.0)	5(2.9)	13(7.6)	6(3.5)
도농복합	48(100)	20(41.7)	1(2.1)	7(14.6)	6(12.5)	1(2.1)	2(4.2)	7(14.6)
농촌	78(100)	40(51.3)	6(7.7)	6(7.7)	10(12.8)	4(5.1)	4(5.1)	4(5.1)
전체	297(100)	140(47.1)	9(3.0)	41(13.8)	45(15.2)	10(3.4)	19(6.4)	17(5.7)
기타								16(5.4)

주: χ^2 : 23.155, P=0.058, DF=14

자료: 조석주, 이상묵, 2008, 124.

- 석: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시민사회와 NGO, 7(2), 189–228.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57–80.
- 박진경, 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259–289.
- 박천웅, 2008, 다문화시민 역량 육성기제로서 자원봉사의 기본 방향, 시민사회와 다문화자원봉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 다문화자원봉사 특별 포럼 자료집), 17–32.
- 설동훈·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용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 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송종호, 2006,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현황과 활동, 민족연구, 28, 29–54.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21–56.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 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50.
- 유영철, 2011, 재한 외국인 정책담당기관의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외국인 정책 관련 법령조정과 중앙정부 소속기관의 통합분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1), 111–140.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3–103.
- 윤진 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Martiniollo, M.,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Presses de Sciences Po)
- 이태식·전영준·구자경·Zia, 2009,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실태 분석 및 지원 방향 도출: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2(1), 42–56.
- 이혜경, 2007,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219–250.
- 이혜경, 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 현상, 한국사회학, 42(2), 104–137.
- 이혜경, 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 147–166.
- 임석희·송주연, 2010, 우리나라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75–294.
- 임형백, 2009, 한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차별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1), 51–74.
- 임형백·이성우·강동우·김미영, 2009,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16(4), 743–773.
- 조석주·이상묵, 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무현,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51–78.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 공간에서 인정을 위한 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53–654.
- 최병두, 2011, 다문화공생: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 최종렬, 2010,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사회 이론, 37, 229–271.
- 한승준·박치성, 2011,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51–82.
- 홍기원, 2008, 이주민 대상 문화사업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 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토론회, 2008.7.10. 자료집), 7–41.
- 황미경, 2010, 국내 외국인 이주자 지원제도와 복지권 고찰, 사회과학연구, 36(3), 233–255.
- 황민혁 역,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Kymlicka, W., 200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 Castles, S. and Miller, M.J., 2003(3rd edn),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Guilford Press; New York.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 교신 : 최병두(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bdchoi@daegu.ac.kr, 전화: 053-850-4155)

Correspondence : Choi, Byung-Doo(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phone: 053-850-4155)

(접수: 2011.5.27, 수정: 2011.6.30, 채택: 2011.7.26)